

노무현 대통령 “수사권 조정 조속 매듭지어야”

- 異見 지속시 대통령 主宰 토론회서 결론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검찰·경찰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빠른 시일내 매듭짓도록 지시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토론회를 열어 결론내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수사권 조정협약의

지지부진한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면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수사권 조정문제가 검·경간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검·경의 해묵은 갈등 현안인 수사권조정 문제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하루 빨리 결론을 내리는 독려 차원의 말씀이었다”며 “그러나 아직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시기, 형식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최근 대통령 발언과 이번 수사권 조정안과의 연관성에 대해 “그 말씀은 총론적이고 원칙론적인 얘기일 뿐 수사권 조정문제와는 별개의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5월 2일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잘 타결되면 좋은 일이고, 잘 안되면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搜查權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정비될 터”

오영교 행자부장관, 제 53기 간부후보생 졸업식서 밝혀

구홍일 경우회장, 수사권 조정 건의

제 53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이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경찰종합학교(교장 한정갑 치안감) 대강당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구홍일 경우회장, 내외귀빈,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어 일반 50명, 해경 8명 등 총 졸업생 58명에게 졸업증서와 영예의 계급장을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김무철 경위(28세)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이혜수 경위(26세)가 국무총리상을, 전귀성 경위(26세)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정광채 경위(33세)가 경찰청장상을, 이여정 경위(31세)가 학교장 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찰의 패러다임을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찰고유의 혁신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조정문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국민봉사기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경찰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 장관은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강화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구홍일 경우회장은 이날 졸업식

전 가진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의 환담 자리에서 경찰 수사권 문제를 언급, 「국립경찰을 창설한지 60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경찰은 그 60년 동안 엄청난 개혁을 거쳐 발전을 거듭해 온 만큼 이제는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선진국형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오 행자부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고, 오 행자부 장관은 경찰 수사권 문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경찰간부 후보생 제도는 지난 47년 창설되어 금년도까지 3,769명을 배출하였고, 여자경찰간부후보생은 지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선발하여 올해까지 24명을 경위로 임용했다.

警友會, 인터넷 교육사업 진출

(주) 이지박스와 사업제휴

경우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서비스 사업은 교육용컨텐츠 개발 전문 인터넷 교육기업체와 경우회가 제휴하여 경우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교육컨텐츠(각종 자격 검정 과목 40여 개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전현직 경위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경우회는 최근 인터넷 교육기업인 (주)이지박스와 사업제휴를 갖고 경우회 홈페이지(ex-police.or.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우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경우회원 혹은 전현직 가족들에게 특별회원 대우를 하게 되며 월 1만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매출액의 일부를 정산하여 경우회의 수익금으로 제공하는 사업인데, 경우회는 경우회 홈페이지는 물론 경우신문 등을 통한 교육상품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기고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日帝 잔재

- 형소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 -

—— 김학배 경무관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



우리 사회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분권과 자율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참심·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수사구조에 있어서는 50여년전 시대상황 속에서 규정된 수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다.

◆ 세계에 유래없는 검사 독점수사구조의 전환

현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한 검사 지배수사구조이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하고, 경찰과 검찰은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반적 근거조차 없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하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이 하나로 결합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축소되었다.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면 유죄 입증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면 유죄의 예단을 피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유지가 곤란한 규문주의적 구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검사제도의 본질에 반한 뿐 아니라, 검사의 수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나 무죄가 선고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무리한 수사 등을 통해서도 그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 부재로 경찰이 스스로 책임지는 수사풍토의 조성조차 어렵게 되었다.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검사가 수사 개시 여부를 지휘 받도록 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중지, 송치명령을 하는 등으로 경찰 수사의지조차 무력화시키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로 현장 경찰관 지휘가 무력화되어 현장 정의가 무시되기도 하고, 번잡한 수사지휘 절차로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 수사구조인 것이다.

경찰이 97%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사상 법과 현실,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고, 정부조직상 독립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철저한 명령

복종 관계로 결합되어 헌법상 민주 정부조직 원리에도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경찰의 발전과 사기를 가로막고 검·경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민주분권적 조정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에 충실한 합리적인 민주분권적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개정하여 경찰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검찰청법 제53조를 개정하여 검·경간 명령복종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한편 검사에게 수사상 일반적 기준 제정권, 경찰수사 사건 전체를 송치하고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여 수사상 적법절차, 법률 적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의 통제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송치 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원활한 공소권 행사를 보장한다. 각종 영장청구권,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긴급 체포 사후승인권 등 검사의 인권통제기능 또한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수사기관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검찰 역시 인권침해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경찰의 조정안대로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수사를 경찰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의 인권침해 통제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민주분권적 수사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국민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경찰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수사를 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동기가 부여되어 자구노력과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켜 경찰수사 역량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 경찰수사서비스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의 제고에 기여될 것이다.

◆ 형사소송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의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 헌법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권도 헌법 정신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반드시 분권이 되어야 한다.

총 회 공 고

제 29차 정기 전국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공고함.

○ 일 시 : 2005년 5월 17일(화) 11시
※ 대의원은 10시 30분까지 입장완료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 도로교통안전공단 신관 7층『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2호선 신당역(3번 출구), 상왕십리역(6번 출구)
6호선 신당역(3번 출구)

○ 부의안건

- 제 1호 안건 : 중앙회 임원선출(안)
- 제 2호 안건 :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 제 3호 안건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제 4호 안건 : 2005년도 회비결정(안)

2005년 5월 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 장 구 홍 일

선거 및 입후보 등록 공고

2005년 5월 17일 실시하는 제29차 정기전국총회에서 선출할 중앙회 임원(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사 10인) 선거 및 입후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 거 일 : 2005년 5월 17일(화) 11:00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 도로교통안전공단 신관7층 회의실

○ 등록기간 : 2005년 5월 2일(월) 09:00~2005년 5월 6일(금) 17:00까지

○ 구비서류(원본제출)

- ※ 규격 A4용지
- ①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이력서(경력증명서 첨부) 1부
- ⑤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 1부
- ⑦ 기탁금 500만원(회장 입후보자에 한함)
- ※ 기타 상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바람

○ 접 수 처 : (우)100-82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전화

- 일반전화 : (02)2232-9999
- 경비전화 : 8-3348
- F A X : (02)2231-9889

2005년 5월 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전 용 찬